73 자동차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췌장암

성별 남성 나이 51세 직종 자동차조립직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□사업장에서 자동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였고, 1999년에서 2010년까지는 자동차 앞, 뒷유리 장착 전 고정을 위해 프라이머도포 작업을 하였다. 2010년 3월 복통으로 대학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상 췌장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, 조직 검사상 췌장암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약 11년간 □사업장에서 자동차 내부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. 12시간 교대근무 형태였으며, 주된 작업은 자동차 내부 자재를 장착하는 업무였으며, 1999년부터 2010년까지 □사업장에서 자동차 앞, 뒷유리를 장착하기 전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하였다. 1992년부터 2010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메틸부틸케톤, 노말부틸아세테이트 등은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으며, 작업공정에서 토륨이나 방사선은 취급하지 않았다.

3 해부학적 분류

소화기계암

4 유해인자

화학적 요인(유기용제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0년 3월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CT 상에서 췌장암이 의심 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, 조직 검사상 췌장암을 진단받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1988년부터 1999년 까지 □사업장에서 자동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였고 1999년에서 2010년까지는 자동차 앞, 뒷유리 장착 전 고정을 위해 프라이머도포 작업을 하였다. 1992년부터 2010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메틸부틸케톤, 노말부틸아세테이트 등은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으며, 췌장암과 관련된 유해인자로 알려진토륨이나 방사선을 작업공정에서 취급하지 않았다.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인 췌장암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.